하동군의회 공고 제2026 - 46호

하동군 고운 최치원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고운 최치원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1. 6.

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

1. **조례명**: 하동군 고운 최치원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2. **제안이유**

○ 하동군과 관련된 고운 최치원 선생의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팩스: 055-880-2939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3) e-mail: jina927@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고운 최치원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하동군 고운 최치원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고운 최치원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자원”이란 고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유물·기록·설화 등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으로서 하동군에 소재하거나 하동군과 역사적·문화적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2. 고운 최치원 선생에 관한 자료의 수집·정리·번역·기록화 및 자료집 발간
3. 운암영당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보수·정비 및 그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정비

4. 역사문화자원의 교육・관람・체험에 필요한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정비

5. 교육・전시・문화행사・탐방 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6. 고운 최치원 선생 관련 기념사업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7. 국내외 관련 지역・기관 등과의 학술・문화 교류

제5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역사문화자원이나 관련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